

의안번호	2201899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4.08.23.
추계번호	24C199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1~8구간의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38억원, 2030년 1,517억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7,884억원(연평균 1,5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9~10구간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 값으로 이에 대한 결과 값이 추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우선적 학자금 지원 (안 제49조의4)	1,638	1,607	1,576	1,546	1,517	7,884	1,577

주: 1)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의 총재정소요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한 값임

2) 이미 등록금 전액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와 기초·차상위계층'과 대상자수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한 '9~10구간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제외한 결과 값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1항) 재단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	(1~8구간 첫째 및 둘째)
		×	(기초·차상위, 1~8구간 셋째) 2024년 현재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9~10구간) 현행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소득구간 1~8구간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9~10구간에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해당 구간의 가구에서의 다자녀 가구 수 및 학생 수,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 대학의 종류에 따른 등록금 금액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고 ¹⁾ , 소득 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및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이 이미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시점에서 관련 규모 및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1~8구간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 관련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은 다자녀가정²⁾의 자녀를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한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본 추계서에서는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전액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의 비용을 추계함
 - － 2024년 현재 기초·차상위의 모든 자녀 및 다자녀 셋째 이상에게는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1) 참고로 2024년 기준 평균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학교 7,629천원, 4년제 국·공립 4,211천원이었으며, 전문사립대학은 6,250천원, 공립전문대학은 2,377천원임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안 제36조)

- 9~10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 가구 중 다자녀 비율과 다자녀 중 대학생 비율,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 대학의 종류에 따른 등록금 금액 등에 대한 가정이 곤란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등 기타 재정지원이 실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1~8구간의 다자녀 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을 전액 무상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2024년 현재 다자녀가구의 첫째 및 둘째에게 구간별 한도를 달리하여 장학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전액 등록금 지원시의 총재정소요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대상자수 추정) 2024년 1학기 기준 구간별 지원대상인원(첫째 및 둘째 자녀) 수에 최근 3년간 대학생³⁾수 증감율을 적용
 - (총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등록금 지원 총액은 교육부가 제출한 구간별 지원 학생 평균 등록금(2024년 1학기 기준)에 연도별 지원 대학생수(추정치)를 적용
 - (기준선: 현행법에 따른 재정소요) 현행법에 따라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지원되던 장학금 금액(2024년 1학기 기준)단가에⁴⁾⁵⁾ 연도별 지원 대학생수(추정치)를 적용
-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2020년~2023년 4.1. 및 10.1.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원격·기술·기능 제외)의 대학생수를 바탕으로 산출

4) 다자녀 장학금 한도의 경우 2024년 한도 인상이 있었으나, 2020~2023년도에는 지원 한도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동 금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5) 참고로, 2024년 현재 구간별 다자녀 장학금 한도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80만원, 7~8구간은 450만원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추계가 곤란한 대상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을 제외한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무상지급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계산함

-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추가재정소요는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학자금이 전액 무상지원될 경우의 총재정소요에서 기존 장학금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설정함
- (지원 대상자수)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수는 2024년 1학기 기준 구간별 다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수에 최근 3년간 대학생 수 증감율을 적용하여 도출
 - － 추계기간 동안 대상자수 증감율은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대학생 수 증감율인 -1.90%를 적용

[표 2]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인원수(2024년 1학기 기준)

(단위: 명)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인원수	13,358	10,117	10,928	10,964	5,477	16,499	9,973	20,404

주: 2024년 1학기('24.5월말) 기준 구간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수 임
자료: 교육부

[표 3] 추계기간동안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인원수(추정)

(단위: 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구간	12,856	12,613	12,374	12,139	11,909
2구간	9,737	9,553	9,372	9,194	9,020
3구간	10,518	10,318	10,123	9,931	9,743
4구간	10,552	10,352	10,156	9,964	9,775
5구간	5,271	5,171	5,073	4,977	4,883
6구간	15,880	15,579	15,283	14,994	14,709
7구간	9,599	9,417	9,238	9,063	8,891
8구간	19,638	19,266	18,901	18,542	18,191

주: 2024년 1학기('24.5월말) 기준 구간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수에 최근 3년간 대학생수 증감율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총 재정소요: 총지원금액)** 2024년 1학기 기준 1~8구간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평균 등록금⁶⁾에 추계기간 동안의 대상자수 추정치를 곱하여 도출

[표 4]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1인당 평균 등록금(2024년 1학기 기준)

(단위: 천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평균등록금	6,269	6,292	6,277	6,275	6,302	6,364	6,359	6,388

주: 2024년 1학기 기준 구간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평균등록금의 연간 환산액
자료: 교육부

[표 5]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총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5,949	5,836	5,725	5,617	5,510	28,637	5,727

주: 2024년 1학기 기준 구간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평균등록금의 연간 환산액에 추계기간 동안의 대상자수 추정치를 곱하여 도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하 재정소요: 기준선)** 현행 제도하에서 소요되는 1~8구간 다자녀 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 장학금 지원액을 산출하며, 해당 학생들의 구간별 평균 장학금 지원액에 추계기간 동안의 대상자수 추정치를 곱하여 산출

[표 6]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장학금 평균(2024년 1학기 기준)

(단위: 천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다자녀장학금	5,059	5,062	5,043	4,410	4,434	4,444	4,212	4,217

주: 2024년 1학기('24.5월말) 기준 구간별 다자녀가정 첫째 및 둘째 자녀의 평균 장학금 연간 환산값
자료: 교육부

6) 교육부 제출자료

[표 7] 현 제도에서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현행 제도하 재정소요	4,311	4,229	4,149	4,070	3,993	20,753	4,151

주: 1) 총재정소요는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총소요재원
 2) 현행 제도하 재정소요는 해당 인원에게 기존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임
 3) 추가재정소요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제도하 재정소요를 차감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에 개정안에 따라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7,884억원(연평균 1,5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8]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5,949	5,836	5,725	5,617	5,510	28,637	5,727
현행 제도하 재정소요	-4,311	-4,229	-4,149	-4,070	-3,993	-20,753	-4,151
추가재정소요	1,638	1,607	1,576	1,546	1,517	7,884	1,577

주: 1) 총재정소요는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총소요재원
 2) 현행 제도하 재정소요는 해당 인원에게 기존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임
 3) 추가재정소요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제도하 재정소요를 차감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1~8구간 다자녀가정의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을 할 경우 소요 금액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을 유지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결과값으로 소득구간 변경, 실제 대상자 수 및 등록금과 장학금 수급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 9~10구간 다자녀가정의 자녀 및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 기초 및 차
상위계층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액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값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